전자 상거래의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

이장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되면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갖추기 위한 소위 '인터넷라운드'가 시작되었다.
그 주요 쟁점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관세 · 지불체계와 같은 재정적인 과제, 둘째는 상거래 정보의 무결성(integrity) · 기밀성 보장과 같은 보안(security)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과제, 셋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 전달 정보의 내용 즉 컨텐트(Contents)와 같은 전자 상거래 기반에 관련된 과제이다.
우리 정부는 전자 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단체, 기업 등의 주체(player)들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들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나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이해가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선진국의 독주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컨소시엄에의 참가 또는 공동 연구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라운드' 등장

최근 정보통신 네트워크인 인터넷(Internet)의 사용 급증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는 기업간 상거래 범위를 벗어나 기존 경제 질서를 변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대한 국제간 관세제도를 협의하는 소위 '인터넷라운드'가 세계적인 주요 통상 쟁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품 교역에 무관세 정책을 주장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각국을 비롯한 OECD, WTO, G7 등 경제 협력 조직간의 공동 대응책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내년 7월에는 WTO, 10월에는 OECD가

주최하는 전자상거래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내년에는 「전자상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대다수 국가에게 있어 전자 상거래라는 변혁 물결에의 대응은 현재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과 함께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해결 과제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전자 상거래의 국내외 동향

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이 당시는 주로 기업간 거래에 대한 것이었고, 전자 상거래가 국가간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 년 전이었다.

이때부터 OECD, UN과 같은 국제 기구, G7 등은 전자적 환경에서의 상업적 활동으로 제기되는 무역, 조세, 전자 메시지 · 서명 · 인증의 법적 구속력 등 국제적인 경제 활동 측면과 관련된 해결 과제를 연구 분석하고 논의를 전개해왔다.

미국은 인터넷 태동 국가라는 우위를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기술적 · 상업적 응용에 가장 앞서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를 국가 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세계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와 인터넷 교역에 대한 새로운 내국세 과세 금지를 표방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금년 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면서, 2000년까지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인프라와 제품 · 서비스이용체제의 구축, 역내의 관련 제도적 틀 구축,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 제고, 국제 기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은 통산성 등 정부 중심으로 ECOM(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 전자상거래진흥협회)을 설립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전자 상거래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내년에 「전자상거래기본법」과 함께 「전자

자금이체법」, 「전자서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통상산업부의 주관하에 정부 각 부처의 담당 실·국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CALS/EC정책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및 소비자 보호 단체들로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실무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여기서는 전자 상거래 소비자의 보호 시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해갈 예정이다.

전자 상거래의 범위

전자 상거래는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정보통신 기기라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상업적인 거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OECD는 이를 "인터넷과 같이 개방된 통신망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및 거래에 관련된 망의 인프라까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전자 상거래는 기업들이 정보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출발하였다. 80년대부터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적 서류 교환)는 전자 상거래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EDI는 조직과 조직간의 서류 교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고객과 조직간 상거래를 가능케 한 인터넷만큼 그 영향도는 미미하였다. 全세계적인 시장 표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상품을 보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상거래 행위가 이제는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을 통한 전자 상거래로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전자 문서 교환, 전자 메시징, 전자 출판 등이 바로 고객-조직, 조직-조직간의 상행위 수단으로서, 인터넷 등장으로 상거래에 가장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영역이다. 나머지 기업 전자 도서관은 조직이 외부(고객, 조직)와의 관계 정립과 시장 성공을 위해 필요한 내부적인 거래 행위를 가리키는 영역이다. 현재 조직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인트라넷(Intranet)이 이의 영역에 속하는 응용 수단이다.

〈그림〉 전자 상거래의 영향 범위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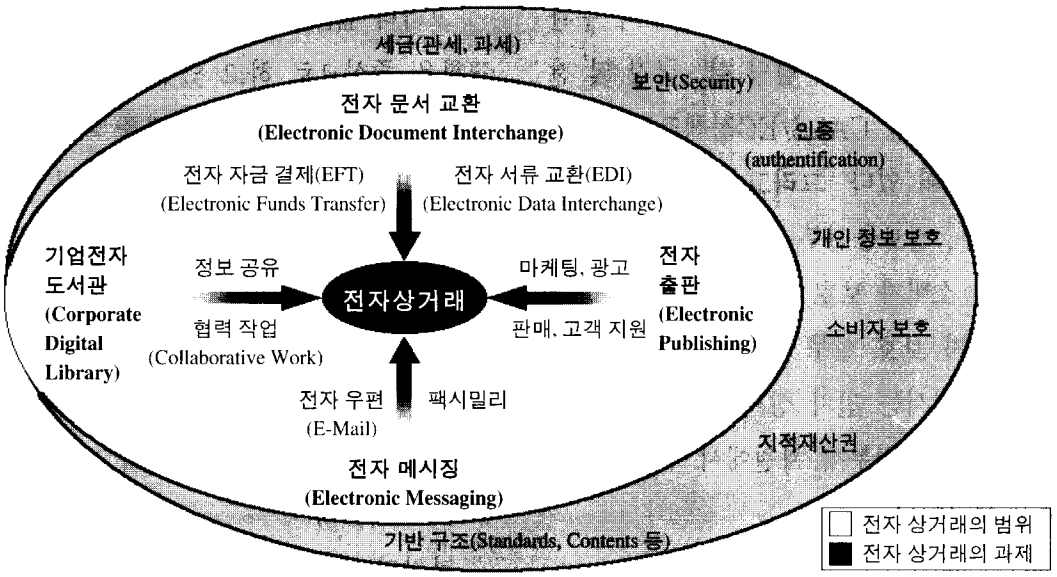

앞으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조직(기업, 행정부 등)들이 개인(고객)에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과거의 상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조직들에 의해 인터넷에 저장된 상거래 정보를 개인들이 직접 탐색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들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는 지금까지의 '조직의 고객 탐색 방식'에서 '고객의 조직 탐색 유도 방식'으로 시장 접근에 대한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자 상거래의 주요 과제와 대응 전략

현재 전자 상거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세계 각국이나 국제 조직이 쟁점화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관세 · 지불체계와 같은 재정적인 과제, 둘째는 상거래 정보의 무결성(integrity) · 기밀성 보장과 같은 보안(Security)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과제, 셋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 전달 정보의 내용 즉 컨텐트(Contents)와 같은 전자 상거래 기반에 관련된 과제이다.

〈표〉 전자 상거래의 과제와 대응 전략

과제	내용	정책 방향 및 대응 전략
· 조세 · 전자지불체계	·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歲入을 유지하는 조세제도 · 인터넷 상거래의 비관세	· 무관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전자 지불, 전자 화폐에 대한 기술 확보 및 국제 공동 연구 추진
· 보안 · 인증 · 프라이버시	· 국제적인 암호화 통용 조건 · 암호화 기술의 개발 · 전자 서명의 조건 및 보증체제 · 암호화의 악용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권 확보	· 핵심 보안 기술 개발 지원 · 전자 상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 정보 규제 활동의 투명성 제고
· 정보통신망 관리 · 컨텐트(Content) · 지적재산권	· 인터넷 주소의 관리 방안 · 컨텐트의 판단을 위한 등급(rating), 선별filtering)의 활용 방안 · 지적재산권의 대상, 권리, 효력 등에 대한 규정	· 인터넷 컨텐트의 개발 지원 · 인터넷 컨텐트의 등급 표시 및 필터링시스템 등과 관련된 제도 및 기술 개발 · 보급 · 지적재산권 대상, 권리, 효력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 · 국가 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 단체 설립 추진 및 시험 모델 개발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재정적인 과제는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세입을 유지하는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과제는 국가간 경제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어서 현재 각국간에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영상물, CD 등 인터넷으로 다운로드(download)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무관세화는 물론, 그 상품의 실물 거래에도 관세를 매기지 말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인터넷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신설하지 말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기술뿐만 아니라 이의 서비스 상품에 대해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전자 상거래의 무관세화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력이나 상품력에서 미흡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인터넷으로 행하는 디지털 상품의 다운로드(download) 형식의 거래는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실물 거래에 대해서는 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무관

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간 상 행위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국내적으로 암호화로 인한 통화 및 세금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고, 전자 화폐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의 대응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 지불, 전자 화폐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보안, 인증,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법적 과제가 중요하다. 상거래 당사자들은 책임있는 기관이 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기본법」 등 각종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센터를 통해 암호 기술, 전자 지불 및 인증 절차의 표준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고 있는 점은 국가의 정보 독점력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의 신뢰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암호의 공개 키(key)나 전자 서명 등을 관리하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가가 정보 관리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또 한편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같은 상황의 발생이 예상된다. 만약 범죄 피의자가 사용한 암호화된 전자 문서의 復號(decryption)를 위해 국가 정부는 정보 열람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권한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세번째 과제인 전자 상거래 기반 구축은 여타 과제보다는 기존 상거래체제에 주는 영향도는 덜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 관리, 컨텐트, 지적재산권과 같은 전자 상거래 시장에의 접근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컨텐트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 상거래에서 상품과 서비스 요소가 되는 컨텐트의 축적과 이의 활용 제고는 기업의 수익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입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컨텐트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한편, 불건전 또는 불순한 컨텐트의 유

통은 정치 · 사회 · 문화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컨텐트에 대한 등급표시 제도의 도입이나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맺음말

인터넷이라는 '가상 시장'이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전자 상거래 논의에 대해서는 이해나 주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전자 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민간 단체, 기업 등 주체(player)들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그 가운데서 관련 분야의 연구나 기술개발이 전개되고, 법 ·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들이 전자 상거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권한이 축소 내지는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존의 각종 법 · 제도를 수정하여 전자 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관련 기술 및 지식의 확보를 위해 선진국의 관련 컨소시엄에 적극 참가하면서 국내 민간 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HRI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1997. 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촉진 방안(안)」.

한국전산원(1997. 7), "범세계적 정보망 -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격주간 정보화 동향」.

J. B. Rapp(1997), "Electronic Commerce: A Washington Perspective," *Readings in Electronic Commerce*, pp. 73~103.